## 1. 한국문학회 회칙 개정 건

현행	수정
제 8조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 회 장 1명  수석부회장 1명 부 회 장 약간 명 총무이사 2명  제9조 본 학회의 <u>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평의원에서 추</u> 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결정한다. 부회장 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 으며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	제 8조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 회 장 1명 (삭제) 부 회 장 약간 명 총무이사 2명  제9조 본 학회의 <u>회장은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</u> 서 선출한다.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으며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제10조 임원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, 통괄하며 총회와 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②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연구이사 중 1인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된다. ④ 이사는 임원회의를 구성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한다. ⑤ 감사는 년 1회 이상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,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.	제10조 임원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, 통괄하며 총회와 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② (삭제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연구이사 중 1인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된다. ④ 이사는 임원회의를 구성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한다. ⑤ 감사는 년 1회 이상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,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.

→ 2017년 12월 16일(토) 총회 때 개정된 회칙은 회원들에게 온·오프라인(『한국문학논총』 77집 게재 및 홈페이지 안내 등)으로 공고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.

## 2.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및 논문심사 규정 개정 건

현행	수정
제4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	제4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
같다.	같다.
① 편집위원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	① 편집위원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
안 연구실적이, <u>한국학술진흥재단</u> 등재(후보)	안 연구실적이, <u>한국연구재단</u> 등재(후보)학술
학술지, <u>A.B급 학술지</u> 또는 국제전문학술지	지, <u>국내일반학술지</u>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
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	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500%
500%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.	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.
* 연구실적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.	* 연구실적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.
② 등재(후보)학술지 논문 : 100%	② 등재(후보)학술지 논문 : 100%
④ <u>A.B급 학술지 논문</u> : 80%	④ <u>국내일반학술지</u> 논문 : 80%
©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: 120%	©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: 120%
❷ 개인 단독저서 : 200%	❷ 개인 단독저서 : 200%
⑩ 공저(5인 이내), 번역서, 편저 : 100%	⑩ 공저(5인 이내), 번역서, 편저 : 100%
※ 노무식사 규정에서도 "A R근 한숙지"를 "군내익반한숙	지"로 수정

- ※ 논문심사 규정에서도 "<u>A.B급 학술지"를 "국내일반학술지"로 수정</u>
- ※ 용어 "한국학술진흥재단"을 "한국연구재단"으로 수정

## 3. 한국문학회 학술상 운영 규정 개정 건

현행	수정
제 6 조(심사 범위)	제 6 조(심사 범위)
(1) 논문 : 심사대상은 <u>전년도 12월, 당년도 4월과 8</u>	(1) 논문 : 심사대상은 <u>전년도 8월과 12월, 당년도 4</u>
<u>월 간행의</u> 『한국문학논총』에 게재된 회원	<u>월 간행된</u> 『한국문학논총』에 게재된 회원
의 논문 중에서 현대문학 1편, 고전문학	의 논문 중에서 현대문학 1편, 고전문학
1편을 선정한다.	1편을 선정한다.
(2) 저서 : 심사 대상은 단독 저서이어야 하고, 회원	(2) 저서 : 심사 대상은 단독 저서이어야 하고, 회원
이 수상 요건을 갖추어 학회에 요청할 때	이 수상 요건을 갖추어 학회에 요청할 때
심사가 이루어진다.	심사가 이루어진다.
제7조(예우)	제7조(예우)
(1)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기념품을 수여한다.	(1)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기념품을 수여한다.
(2) 시상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표하고, 대외 매체에	(2) 시상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표하고, 대외 매체에
도 정보를 제공한다.	도 정보를 제공한다.
(3) 필요한 경우 학회 차원에서 수상자의 학술 활동	(3) 필요한 경우 학회 차원에서 수상자의 학술 활동
에 협조한다.	에 협조한다.
제 8 조(시상시기) : 학술상은 <u>동계</u> 학술대회에서 시상	제 8 조(시상시기) : 학술상은 <u>하계</u> 학술대회에서 시상
한다.	한다.